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03. 12. 15]
규칙 제35호

개정 2004. 6. 11 규칙 제 58호
개정 2007. 12. 21 규칙 제132호
개정 2008. 10. 10 규칙 제142호
일부개정 2012. 1. 6 규칙 제195호
전부개정 2016. 6. 10 규칙 제294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폐지예정 2025. 10. 31 규칙 제469호
(시행일 2026.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을 말한다.
2. “위원회”란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까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기금 정산보고)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 지원금액)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원금액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은 매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일반장학금의 경우 : 중학생에게는 200,000원 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50,000원 이내

2. 특별장학금의 경우 : 일반장학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지급

제6조(장학금 지원신청) 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친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1부

2. 성적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읍·면장)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 구분) 장학금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장학생 :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특별장학생 : 학업 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사람

제8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전체 장학생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읍·면장과 학교장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및 중단 등) ①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경제력 향상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성적이 제7조 각 호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③ 장학금 지원의 중단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시 선발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3.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

부칙(2016. 6. 10 규칙 제29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3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총사업비	기금	자부담	비고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직위 :

성명 : 인(서명)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예시)

〈필 요 성〉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비 :

세부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명	사업비 (원)				기타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사업효과

기타(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

지원사업실적

○ 단체명 :

○ 사업명 :

○ 사업실적 :

- 사업내용 :

- 규모 :

- 사업기간 :

사업비정산결과

○ 총사업비 :

○ 집행액 :

○ 잔액 :

세부사업명	사업비집행(원)				기타
	계	기금	자부담	기타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영수증) 및 사업추진 사진(전·후대비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신청서

1. 신청인

- 소속 : 학교(과학년반)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2. 보호자

- 주 소 :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신청인과의 관계 :

3. 자격자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

4. 보호자 재산소득상황

부동산	동산	기타	비고
원	원	원	

년도 중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학교장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증 평 군 수 귀하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학년도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1. 주 소 :

2. 소 속 : 학교(과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4. 생년월일 :

위 사람을 다음과 같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학업성적 : 상위 %

○ 학습태도 및 품행 :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학년도 장학생 추천서(읍·면장)

○○읍·면장

순 위	추 천 학 生			보 호 자		생 활 상 태			추천의견
	성명	학교	학년	성명	관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기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장 학 금

원정

학교 과 학년 반

성명 (한 자)

위 학생은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추 5)

232 - 40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현금 출납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지 출		잔 액	비고
	종 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별지 제9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월일	적요	지급처		지급액	잔액	결재
		단체명	대표자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5년 10월 31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470호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